

대야초등학교 공고 제2021- 호
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- 가. 자격 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이 아니신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

국가공무원법 제33조

- 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나. 장소 : 대야초등학교 운영위원회(행정실)
다. 기간 : 2021년 3월 8일 ~ 3월 12까지(5일간) 【공휴일 제외, 근무시간이내 08:30~16:30】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각 1통(사진 1매, 행정실 비치, 학교홈페이지 텁재)

2. 위원선거

- 가. 선거일시 : 2021년 3월 19일 (14:00 ~ 16:00)
나. 선거장소 : 대야초등학교 가천도서관 2층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
라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학부모 4명(초등 3명, 유치원 1명)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(입후보자 등록 순에 의함)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1년 3월 15일 ~ 3월 18일 (행정실)

2021년 3월 8일